



국제매매계약의 기초 (제6주)



유 하상

3.1 표면계약서의 구성과 조건

제1절 무역계약서의 종류

1. 매도서

1. 수량(quantity)
2. 선적(shipment)
3. 지급(payment)
4. 보험과 운임(insurance & freight)
5. 수입면허(import licences)
6. 검사(inspection)
7. 산업소유권(industrial property right)
8. 책임(liability)
9. 클레임(claim)
10. 불가항력(force majeure)
11. 중재(arbitration)
12. 무역조건(trade terms)
13. 준거법(governing law)

2. 매도확인서

1. 계약관계(privity)
6. 포장(packing)

3. 구매서

1. 선적통지(notice of shipment)
1. 감소비용 (decreased costs)
5. 특허(patents)
6. 보증(warranty)

3.1 표면계약서의 구성과 조건

제1절 무역계약서의 종류

4. 구매확인서

2. 선박(vessel)
5. 침해(infringement)
6. 품질보증(guarantee of quality)

5. 수출계약서
p/308

Article 5. 경비의 변동(variance of charges)

6. 수입계약서
p.325

Article 14. 확정손해배상액(Liquidated Damages) 손해배상예정액
penalty clause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이행을 태만히 하였을 경우에 연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 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갑이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을은 갑에게 금○○○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한다.
- 본 계약을 갑(소유자, 매도인 등)이 위약하였을시 갑은 을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을(매수인, 임차인 등)이 위약 할 시에는 계약금을 반환치 않고 본 계약은 무효로 함.

Article 16. 해제(termination)

3.1 표면계약서의 구성과 조건

제1절 무역계약서의 종류

기타조항

- 이행보증(performance guarantees) ; 은행보증서, 보증신용장, 계약이행보증금
- 분리가능조항(severability clause) : 일부 계약내용이 무효되더라도 다른 조항은 계속 유효하다는 조항

• 계약양도(assignment clause)

이 계약과 이와 관련한 모든 약정 및 조건은 관계당사자와 그 승계인 및 양수인을 구속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다. 다만,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이 계약이나 이에 따른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도 임의로 또는 법률의 정함에 의거하여 직·간접으로 양도할 수 없다.

• 사정변경조항(hardship clause)/ 이행가혹조항

계약당시 예기하지 못한 경제/정치적 사정으로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현저하게 상업적으로 곤란해져 계약의 본질적 변경이 불가피해진 경우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

3.1 표면계약서의 구성과 조건

제1절 무역계약서의 종류

기타조항

- 웨이버비포기조항(non waiver clause)
- 일시적으로 어느 계약조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후의 동 조항 또는 다른 조항의 이행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거나 이를 박탈할 수 없다는 조항

- 면책승인조항(releases clause)
- 계약완료 때 향후 어떤 법적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

- 신축조항(escalation clause)
- Plant(산업설비)나 선박, 대형 기계류처럼 공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의 경우 각종 원부자재의 가격상승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격의 변경(조정)을 허용하기 위한 조항

Waiver of Sovereign Immunity(주권면제특권포기조항)

- 국가는 주권 행사보유권자를 이유로 타국의 소송에 응소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 자신이 부담하는 채권 또는 책임을 일방적으로 면제시킬 수 있는 특권이 있다.
- 따라서 국가 또는 정부기관과 체결하는 국가계약(state contract)의 경우에는 이러한 주권면제특권을 포기하고 완전히 사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채무 및 책임을 부담하고 소송당사자가 되겠다는 것을 약정하는 주권면제포기조항을 명시해둘 필요가 있다.

3.1 표면계약서의 구성과 조건

제1절 무역계약서의 종류

기타조항

완전합의(Entire Agreement clause, 다른 계약과의 관계)

- 계약체결의 이전단계에서의 그 계약과 관련된 의견교환/합의/약속 등은 정식으로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완전히 흡수 통합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그것과 계약내용이 상치되더라도 과거의 것을 주장할 수 없고 오직 정식으로 체결된 계약내용만이 유효하다는 조항

이 계약은 양당사자 간의 합의내용을 완결 짓는 것이며, 이 계약의 목적과 관련된 이전의 양당사자 간 모든 협상 및 의사표명, 양해, 약정 등을 대체하고, 양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정될 수 없다.

재판관할 (Jurisdiction)

-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없는 경우 재판에 의해 분쟁을 해결함
- 이 경우 소송시 어느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에 관한 조항
- 막연히 한국재판소, 미국재판소라고 한 경우 한국 또는 미국의 어느 재판소라는 뜻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서울/ 뉴욕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

3.1 표면계약서의 구성과 조건

제1절 무역계약서의 종류

P. 278

GERNERAL TERMS & CONDITIUONS(일반조건)

The sale specified on the face hereof shall be subject to the following terms and Conditions.

일반조건

본 계약서의 표면에 명시된 매도는 아래의 조건에 따른다.

P. 278

1. Quantity

Quantity shall be subject to a variation of 10% plus or minus at Seller's option.

1. 수량

수량은 매도자의 선택에 따라 10% 증감변동을 조건으로 한다.

3.1 표면계약서의 구성과 조건

제1절 무역계약서의 종류

P. 278

2. Shipment

Shipment within the time stipulated shall be subject to freight being available. In Case of FOB terms, Buyer is bound to give shipping instructions in time and to Provide necessary shipping space, otherwise, Seller may dispose of the goods for Buyer's account and risk.

In case of shipment in installments, each lot shall be regarded as separate and independent contract. Date of bill of lading is to be taken as date of shipment. Any additional freight and extra charges incidental to such cause or cause as Prescribed in paragraph 8 shall be borne by Buyer.

2. 선적

규정된 시기 이내의 선적은 이용 가능한 운송수단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함
FOB 조건의 경우 매수자는 적시에 선적지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필요한 만큼의 선복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비용과 위험으로 상품을 처리할 수 있다.(선적할 수 있다.)

3.1 표면계약서의 구성과 조건

제1절 무역계약서의 종류

P. 278

3. Payment

The Payment shall be made by means of an irrevocable and confirmed letter of Credit without recourse, in favor of and satisfactory to Seller.

3. 지급

지급은 매도인을 수익자로 하고 매도자가 만족하는 상환청구불능, 취소불능확인신용장 방식으로 해야 한다.

The letter of credit shall cover the full contract amount, shall be established through a prime bank 30 days prior to the contracted shipping date, shall be negotiable on sight draft and shall be valid for negotiation for the relative draft for at least fifteen(15) days after the last day of the month of shipment.

신용장은 총 계약금액을 커버해야 하며, 계약된 선적일자 30일전에 1류 은행을 통해서 개설되어야 한다. 또한 일람불어음의 매입이 가능해야 하며, 선적월의 최종일자 후 적어도 15일 동안은 관련 어음의 매입이 가능해야 한다.

3.1 표면계약서의 구성과 조건

제1절 무역계약서의 종류

P. 279

The letter of credit shall authorize reimbursement to seller for any expense incurred By Seller on account of Buyer pursuant hereto, and shall authorize partial avail against partial delivery.

신용장은 본 계약에 따라 매수인 측(이 지급해야할)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한 모든 비용을 매도자에게 상환되도록 수권되어야 한다. 또한 신용장은 분할인도에 대해 분할로 이용 가능하도록 수권되어야 한다.

If Buyer fails to establish the letter of credit as foregoing. Seller may immediately Cancel the contract. Any bank charges arising in connection with payment hereunder shall be borne by Buyer. In the event of late payment of any amount Due hereunder, Seller shall, in addition to any other remedies, be entitled to Interest at the maximum rate allowed by law in the country of Buyer.

만약에 매수인이 앞에서 말한 대로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는다면 매도자는 즉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본 계약서의 지급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은행수수료는 매수인의 부담이다. 본 계약서에 기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매도인은 모든 배상조치에 추가하여, 매수인 국가의 법률에서 허용하는 최고율의 이자를 보상받을 권리가 주어진다.

3.1 표면계약서의 구성과 조건

제1절 무역계약서의 종류

P. 279

Seller shall retain, for security purpose, full title to all goods covered thereby
Until Seller has received the full contract amount therefor.

매도자는 안전을 목적으로 본 계약서의 총금액을 수령할 때까지 모든 상품을 망라한 모든 권한(소유권, 점유권 등)을 유보한다.

p.280

4. Insurance & Freight

Insurance shall be effected by seller on ICC(A) at one hundred ten percent(110%)
Of the invoice amount in case of CIF terms.

War risk and/or any other risks additional to the foregoing shall be covered only
at the specific request of Buyer and at Buyer's expense.

Any unforeseen increase in freight and/or insurance premium subsequent to the
date of the contract shall be for Buyer/s account.

4. 보험과 운임

보험은 CIF조건인 경우에 송품장 금액의 100%로 ICC(A) 조건으로 부보해야 한다.

앞의 위험이 추가되는 전쟁위험 그리고/혹은 기타의 위험들은 단지 매수인의 요청과
매수인의 비용으로만 부보된다.

본 계약일자 이후의 운임 그리고/혹은 보험료의 예기치 못한 금액의 증가는 매수인의
비용으로 한다.

